

조경수조성관리사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안봉원 | 자격검정위원장_ 조경수조성관리사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조경의 발전과정

우리나라 조경의 역사는 40여년밖에 안되지만 그 실력은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다.

조경의 내용도 과거에는 주택정원이나 공공건물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어 이를 보고 즐기는 수준이었으나 사회가 급속도로 도시화와 산업화로 변천되면서 아름다운 경관 뿐만 아니라 쾌적성과 안전성을 추구하는 조경으로 발전하였고 최근에는 자연성 회복과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친환경적이며 생태계의 복원 등을 목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일반시민도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져 조경에 대한 욕구가 강해졌고, 이에 따라 최근의 조경은 그 수준과 질이 매우 높게 이루어지고 있다.

조경인력의 양성과 조경업

우리나라에 조경이 전문분야로 출범한 것은 1970년대 초가 된다. 1973년도에 최초로 대학과 대학원에 조경전공학과가 개설되어 2008년도 현재 전국에 조경학과 수는 4년제 대학이 39개, 3년제 대학이 2개, 2년제 대학이 10개로 모두 51개 대학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대학에서 1년간 조경학전공으로 입학하는 학생수가 2,300여명에 이르고 있어 매년 수많은 인재가 대학에서 배출되고 있다.

조경공사업체는 1974년에 한국종합조경공사가 발족한 이래 2007년 현재 조경건설업체수가 1,012개소, 조경식재공사업체가 2,532개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체가 1,603개소로 되어 있어 학계나 업계가 짧은 기간에 장족의 발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문화재 수리기술분야에 조경업체가 2008년도 현재 55업체, 문화재수리기술자중 조경기술자가 156명, 문화재수리기능자중 조경기능자가 344명이 있어 이들 업체나 기술인들도 다 조경에 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조경기술자격제도

조경이 발전하고 업무량이 확대되면서 국가에서 조경관련 기술자격제도가 1974년도부터 시작하여 2007년 현재 조경기술자격자 취득자수는 조경기술사가 256명, 조경기사(기사1급) 9,630명, 조경산업기사(조경기사2급) 8,694명, 조경기능사가 26,295명으로 총 조경기술자격증 소지자는 44,875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외에 문화재 보수기술부분에서 조경기사 개별도로 배출되었고 이들 기술 인력은 대부분 설계분야와 시공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조경수 관리사의 필요성

모든 분야가 업무영역이 세분화되고 각 분야마다 전문적인 식견이나 기술을 요구되는 것이 오늘의 추세이다.

조경분야도 조경수의 생산은 과학적인 지식과 현대화된 기술을 가지고 재배하여야만 조경의 변천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수종을 고품질로 생산할 수 있으며 생산된 조경수는 체계적인 유통구조를 통하여 공급되어야만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조경수생산업체현황을 보면 조경수협회회원이 1,300여명이고, 이외에 비회원도 수없이 많으며 이들 재배업자들은 대부분 영세하여 이와 같은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수종별로 과다 생산되거나 품귀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된다.

또한 식재된 조경수는 식재지의 토양, 수분, 비옥도, 일조관계 등 환경에 영향을 받아, 때로는 각종 병해충의 피해를 받아 생육에 장애를 받거나 고사하는 경우도 있어 환경과 병해충 등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하여 수목이 건전하게 자라도록 하여야 하며 아울러 조경수가 갖추어야 할 경관미와 기능성을 고려하여 전지·전정으로 수형을 조절하는 등 수목생장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조경이 성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실정을 감안하여 한국조경수협회에서는 조경수의 생산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선발하여 현업에 임하도록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2008년도에 우선 민간 자격으로 조경수조성관리사 자격검정을 최초로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 이 제도는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며, 1~2년 내에는 국가공인된 자격증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조경수조성관리사 자격검정

2008년도 조경수협회가 주관하여 시행한 조경수조성관리사 시험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자격종목과 자격요건

• 자격종목

조경수조성관리사 2급과 조경수조성관리사 3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 응시자격

조경수조성관리사 2급 :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 되어있고 관련학과 라 함은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경학 및 농림관련학과로 되어있다.

조경수조성관리사 3급 : 만17세 이상으로 학력제한 없다.

2. 등급별 자격기준

조경수조성관리사 2급 : 조경수와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공학적 기술 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생산·시공·관리·검사·분석·유통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보유자로 한다.

조경수조성관리사 3급 : 조경수와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생산·유통·식재·관리·검사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보유자로 한다.

3. 시험구분

시험과목은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으로 구분되었고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자에 한하여 응시 자격이 있고 2차 시험에서 불합격된 자는 2년간 재시험을 볼 수 있다.

4. 시험과목

• 1차 필기시험

조경수조성관리사 2급 시험과목 : 조경식물학, 조경수 생산학, 조경수 관리학, 조경수 조형 및 품질론 등 4개 과목

조경수조성관리사 3급 시험과목 : 조경수생산, 조경수 관리, 조경수 조형 및 품질 등 3개 과목

• 2차 실기시험

조경수조성관리사 2급 시험 : 조경수 조성에 관한 실무로서 필답과 작업형으로 되어 있다.

조경수조성간리사 3급 시험 : 조경수조성관리 실무로서 작업형으로 되어 있다.

5. 자격시험의 운영

본 자격시험은 국가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험관리와 동일한 방법과 절차대로 시행하였으며 이 시험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검정위원을 구성하고 시험을 실시하였다.

1) 검정위원회의 구성

검정위원은 대학의 교수와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하였고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1인과 위원으로는 운영위원, 출제위원, 검토위원, 채점위원, 감독위원 등 5개 분과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마다 위원장 1인과 관련전문가 2명씩 위촉하여 시험을 관리하였다.

2) 시험문제 출제

각 시험과목별로 대학교수와 연구기관, 업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에 출제 의뢰하였으며 이 출제된 문제는 검토위원의 검토를 거쳐 최종시험문제로 확정하였다.

6. 시험현황

이 시험이 최초로 하는 시험이고 또 널리 홍보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응시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우려한 바도 있었으나 예상외로 총 221명이 응시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들 응시자들은 대부분 조경업체근무자와 조경수생산자이고 이외에 관련학과 학생, 공무원, 기타로 되어 있다.

1차 필기시험을 거쳐 2차까지 시험을 본 결과 최종 합격자는 응시생의 48%인 106명을 배출하여 자격증을 교부한 바 있다.

7. 2009년도 시험계획

1회를 2008년도에 실시한 바 있고, 2009년도에는 제2회를 5월 중순에 제3회를 9월 하순에 실시할 예정이다. ☂

※ 금후 과제 ※

이 시험을 처음 시도한 결과로서는 만족한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 자격자들이 앞으로 현업에서 기대할 만큼 전문성을 발휘하려면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론과 실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수목의 관리를 함에 있어 보다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사후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가로수의 경우 잘못된 진지·전정으로 인하여 가로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어 이 가로수의 관리에 대하여는 이들 기술자들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이를 감독하는 관계자들에게도 교육을 실시하여 감독자와 시행자가 일치된 방향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는, 이후 조경수의 사후관리는 이들 자격증소지자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법규가 제정되어 이들 자격증소지자의 입지를 확고히 할 뿐만 아니라 조경의 관리도 책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는, 국가 공인 자격제도로의 발전을 들 수 있다.

민간이 시행하는 모든 자격증제도는 1~2년 시행한 실적을 평가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국가인정자격으로 변경되는데 본 자격증제도도 빠른 시일 내에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증제도로 바뀌어지기를 기대한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첫 번째 시행한 시험이지만 모든 시험절차와 관리가 국가가 시행하는 방법과 절차를 그대로 밟아왔기에 국가의 공인 받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민간시험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증제도로 바뀌게 되면 재차 시험절차를 밟아 국가공인 자격으로 변경하게 되는데 이미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들은 이후 시행하는 교육과 현업을 통하여 많은 실력이 향상될 것임으로 국가공인 자격을 위한 시험은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간 이 시험을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수고한 조경수협회 관계자들과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감독하고 채점하는 등 시험관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